

앞서가는 공제, 신뢰받는 공제

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경기지부

163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 (화물공제 경기회관6층) TEL 031-242-3355, FAX 031-246-7947

업 무 4 과

과 장 : 김 흥 현

문서번호 : 경기 제 0091 호

시행일자 : 2022. 06. 01 .

수 신 : 각 조합원사

참 조 : 공제(보험) 담당자

선결		지시	
접	일자	결 재 · 공 람	
	시간		
수	번호		
처 리 과			
담 당 자			

제 목 : 자부담금제도 변경예고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경기 제425호(2022.04.05.) “자부담금제도 변경안내” 와 관련입니다.

3. 우리지부는 경영개선과 사고다발자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사고율을 감소하고자 2022년도 제1회 지부자문위원회(2022.03.15.)에서 자부담금개선안을 의결, 본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7.1일자로 시행됨을 기 안내 하였으나,

4. 개선된 자부담제도는 현 여건상 부담이 많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, 2022년 제2회 지부자문위원회(2022.06.02.)에서 수정안이 의결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며,

5. 아울러 수정의결된 자부담금제도는 본부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면 재 안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163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 (화물공제 경기회관6층) TEL 031-242-3355, FAX 031-246-7947

업 무 4 과

과 장 : 김 흥 현

- 아 래 -

☐ 대인 자부담금 부활 및 사고건에 대한 가중제 적용

☐ 대물 자부담금 사고건에 대한 가중에 적용

☐ 적용 내용

구 분		1회 사고	2회 사고	3회 이상	비 고
시행예정안		30만원	50만원	70만원	대인,대물 동일
수정안	대 인	-	30만원	50만원	
	대 물	30만원	30만원	50만원	

☐ 시행일 : 2022. 07. 01일자 신규 및 갱신차량의 사고분부터. “끝”



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

경 기 지 부

